

공정거래위원회 오리업계 담합행위 과징금 60억 부과

오리업계, 정부와 협의하에 이뤄진 수급조절사업으로 억울 관련법 등 제도 정비 필요, 국민께 송구 재발 방지 위해 노력

오리업계도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오리 신선육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9개 계열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60억1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오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2억2천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오리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리협회는 공정위가 지적한 담합행위가 이뤄진 2013년과 2016년은 농식품부와 협회가 협의하에 실시한 수급조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축산자조금법이나 축산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상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정부 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해 오리고기를 애용하고 있는 국민께 송구스러운 입장으로 향후 재발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갈 것을 밝혔다.




축산식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공정위 판단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리업계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생산량을 담합했다는 것이다.

또 오리협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구성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판단한 담합방식은 시정명령을 받은 9개 사업자가 가입된 오리협회의 계열화협의회 등을 통해 회합 및 전화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한, 서로 합의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호 교차 점검계획 등을 마

련하고 타 사업자의 종오리 도태 현장을 방문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오리협회는 오리고기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새끼오리 입식량 및 종오리를 감축하거나 종란을 폐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근거로 삼았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육용종계를 시작으로 삼계, 육계, 토종닭 등에 대해서도 담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가금업계 담합행위 처벌 현황

2019. 10월

4개 사업자 종계 생산량 담합(과징금 약 3억 원)

2021. 8월

7개 사업자 삼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과징금 약 251억 원, 2개사 고발)

2022. 2월

16개 사업자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과징금 약 1,758억 원, 5개사 고발)

2022. 3월

한국육계협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과징금 약 12억 원, 고발)

2022. 4월

9개 사업자 토종닭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과징금 약 6억 원) 및 한국토종닭협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과징금 약 1억 원)

오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대한 협회 입장



지난해 8월 23일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농업계가 한목소리로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를 중단하라'고 외친 공정위 앞에서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출처: 한국농어민신문)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오리고기 계열화 사업자(9개)에 대해 과징금 총 60억 1,200만 원과 협회에 대한 과징금 2억 2,400만 원 부과를 잠정 확정된 '22. 6.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리 계열화 사업자들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오리고기의 생산량 및 가격을 담합한 행위와 오리협회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종오리 감축 등 생산량을 근본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은 과징금 조치가 결정된 것이다. 이에 오리협회는 일부 계열화 사업자들 자체적으로 오리고기의 가격을 담합한 행위의 경우 처벌받아 마땅하나, 공정위가 지적한 위법행위 중 2013년에 실시한 종란감축과 2016년에 실시한 종오리 감축의 경우 농식품부와 협회가 협의하여 실시해 온 수급조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를 생산량을 제한하는 위법행위로 판단한 점의 경우 앞서 육계 및 토종닭 처분의 수급조절사업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오리협회는 현행 축산자조금법과 축산법, 축산 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상에 수급조절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농식품부와 공정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제도 정비를 촉구하였다. 또한, 어떠한 이유를 떠나 이번에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오리고기를 애용하는 국민께 대단히 송구스러움을 밝히면서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